

[일련번호 : 27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노인일자리(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) 활동비 지급관리 소홀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♡♡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♡♡동은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」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(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) 활동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2022~2024년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」 중 ‘수요처 행동강령’에 따르면,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활동 종료 후 ‘공익활동 활동일지(서식2-8호)’에 본인의 서명 및 수요처(수요자)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매월 말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, 시·군·구 및 수행기관은 제출된 활동일지를 확인하는 등 참여자의 활동현황을 파악한 후, 다음 달 5일까지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또한 활동일지 허위작성 등을 막기 위해 참여자는 활동일지에 반드시 자필이름 또는 지장으로 확인서명을 하여야 한다.

- 활동 후 활동일지에 본인 서명 및 수요처(수요자) 확인을 받고 매월 말일 전까지 수행기관으로 제출
- 활동 후 활동일지에 반드시 자필 또는 지장(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)으로 확인 서명  
※ (예시) '홍길동' 또는 '홍' 가능, 도장 불가

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활동방법,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해당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어 활동비가 지급된다. 이와 관련하여, 수행기관은 자체교육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. 해당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어 활동비가 지급되고, 이와 관련하여, 수행기관은 자체교육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♣♣동은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 시, 반드시 참여자의 자필 또는 지장으로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도장으로 서명하는 등 활동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활동일지 작성·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,

필수 안전교육을 2023년 5시간, 2024년 6시간 실시하여야 함에도 3시간만 실시한 사실이 있다.

[표1] 노인일자리 활동일지 작성 부적정 내역

구분	부적정 내역
2022년~2025년 6월	활동일지에 참여자 자필서명이나 읽고 쓰기 어려운 경우 지장을 찍어야 하나, 도장만 날인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실제 서명한 것인지 확인 불가
2022년 11~12월	활동비 지급 근거인 활동일지 일체 미보관
2022년 4월~2023년 12월	활동일지 확인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누락 (전자입력된 이름만 기재)
2024.9.19.	활동교육 실시하였으나, 활동일지에 청소활동으로 기재

[표2]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관리 부적정 내역

구분	부적정 내역
2023년, 2024년	각각 안전교육 3시간 실시 (2024년 필수 6시간, 2023년 필수 5시간)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♣♣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 5. 조치할 사항

### ♣♣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